



제433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0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역병 등에 대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생략)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u>지원하기</u> 위하여 <u>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② ----- ----- ----- ----- ----- <u>지원하거나 상해를 보상하기</u>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군 복무는 전투훈련, 무기·장비 운용, 각종 야외훈련 등으로 인해 상해 발생 위험이 상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군 상해보험은 군인의 희생과 위험 부담에 대해 국가가 사전적·제도적으로 보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그 필요

성이 큼.

□ 현행법은 국가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하여 군 상해보험의 가입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현재 국가의 상해보험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대신 국방부는 복무 중 상해를 입은 현역병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상, 군 병원 진료 및 민간병원 위탁진료, 진료비 지원, 휴가 등으로 출타 시 적용되는 무료 상해보험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복무 중 상해·사망 장병 관련 지원제도 >

지원제도	내 용
군인 재해보상제도	■ (지원내용) 병사가 공무상 사망 또는 군복무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는 경우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지급 - 사망보상금 : 공무상 사망 시 순직유형에 따라 정액(1.4~3.4억 원) 지급 - 장애보상금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 시 장애발생 원인·등급에 따라 정액(0.3~1.3억 원) 지급
병 무료 상해보험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지원대상)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 자동가입되므로 별도 가입신청 절차 불요 ■ (보험기간) 입대일~전역일 ■ (보장내용) 보험기간 내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부대 밖(휴가·외출·외박)에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1억원 지급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상해 시 최대 3~4억원 지급 - 부대 안·밖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4억원 지급
군병원 진료/	■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

지원제도	내 용
위탁진료제도	■ (지원범위) 복무기간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 ■ (지원내용) 군병원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군 내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를 실시하여 발생한 진료비의 전액을 지원 ■ ('26년도 예산) 83억원(위탁진료비)
자율진료비 지원 제도	■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 (지원범위) 복무기간 중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한 민간병원 진료 ■ (지원내용) 민간병원 진료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복무기간 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는 비급여항목 포함 ■ ('26년도 예산) 77억원
전우사랑위로금	■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 (지급조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일반사망 중 자해사망을 제외한 사망에 대해 지급 * 자해사망자 중 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 시에는 지급 ■ (지급금액) 1억원

□ 동 지원제도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민간 보험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급여의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지급 요건 등이 보험계약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민간 보험과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지원 내용이 매년의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법적 강행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급여의 지속성·예측가능성 및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한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 군 복무 장병 상해보험 도입사례 >

지방자치단체	내 용	
	지원대상	주요 보장항목
경기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상해/질병사망 :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 최대 5천만원 •질병후유장해 (80~100%) : 최대 5천만원 •중증장해진단비 : 1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2천만원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최대 3억원 •상해/질병 입원 : 일당 4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상해/질병사망 :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 최대 5천만원 •질병후유장해 (80~100%) :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 일당 3만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상해/질병사망 :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80~100%) : 최대 1천만원 •질병후유장해 (80%) : 최대 1천만원 •중증장해진단비 : 1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 일당 1.5만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상해/질병사망 :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 최대 3천만원 •질병후유장해 (80~100%) : 최대 3천만원 •중증장해진단비 : 1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 일당 3만원
서울 동작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상해/질병사망 :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 최대 2천만원 •질병후유장해 (80~100%) : 최대 2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 일당 3만원
서울 금천구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상해/질병사망 :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 최대 2천만원 •질병후유장해 (80~100%) : 최대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지방자치단체	내 용	
	지원대상	주요 보장항목
		후유장해 : 최대 1천만원 •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최대 1억원 • 상해/질병 입원 : 일당 2만원

□ 개정안은 상해보험 가입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국가가 직접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으로,

군 장병 간 보장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복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의 군 복무 보호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현재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시행 중인 ‘국방 맞춤형복지 단체상해보험’ 예산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역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군 상해보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고 발생 빈도와 보장 수준에 따라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국방 맞춤형복지 단체상해보험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453.7	483.7	353.6	350.8	454.1	504.5	556

또한 국방부는 현재 군인이 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

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군 병원에서 무상 진료(군병원 진료/위탁진료제도)를 받거나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자율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상해보험의 일괄적 의무 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과다 발생 가능성 및 신·구 제도 간 이용에 따른 군인의 편의성 및 만족도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군 상해보험 가입제도 도입 여부는 현행 의료지원 제도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아울러 군 상해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존 제도와 역할 중첩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 상해를 입은 현역병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기존 시행 중인 지원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보험료 지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